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1. 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5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개인신용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20.1월~2021.2월 중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의 취급월별 12개월 경과 후 부도율이 신용원가를 상회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대출 취급가능 신용등급, 대출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상품운영기준에 반영하고, 차주 상환능력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연체 및 부실채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모사채 취급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

검사착수일(2022.3.28.) 현재 사모사채 차주의 재무상태, 관계사 자금보충 능력 등을 고려한 별도의 취급기준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업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세부 취급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금리상승 등 경기변동에 따른 차주의 재무상황 악화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모사채 취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세부 취급한도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금융사고 예방업무 절차 개선

검사착수일(2022.3.28.) 현재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따라 여·수신, 자금·출납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중요증서 관리 철저, 채무관계인 자격요건 확인, 담보 취득시 적정성 확인, 연 1회 이상 채권서류 점검 등 서류 점검 위주의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PF대출 관련 금융사고 유형에 대비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위조 등에 따른 사고발생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바,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자금거래에 대한 복수결재, 차주에 대한 대출금 출금 사실 통지 등 자금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동일 직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대출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마련 미흡

검사착수일(2022.3.28.) 현재 내규 「유가증권 투자규정」은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기준, 운용실적 및 자산운용의 적정성 관리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이나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미흡하고,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임기준 운영시 정하여야 할 벤치마크 선정기준 및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정하지 않고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내규의 규율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검사착수일(2022.3.28.) 현재 계열사 연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축은행의 비대면대출 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차등적인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바

앞으로 저축은행 앱 유입방식에 따른 금리 차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심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대출원가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 개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시스템'은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처리자, 최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입력·조회 기능은 있으나, 중간 안내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이력 조회가 불가하고,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위한 정형화된 스크립트나 SMS 문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구 불수용 사유 등이 충실히 안내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며, 소득입증자료 등 제출방식의 불편 등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시스템'에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중간안내 및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형화된 스크립트 또는 SMS 문구를 마련하여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불수용 사유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한편, 소득입증자료 등의 제출방식 간소화 등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5) 대출청약철회권 제도 운용 개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이 대출금 상환을 조회한 후 가상계좌 등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시 대출청약철회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안내 방식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고객이 대출청약철회권 행사기간(14일) 내에 대출금 상환을 조회하는 경우 대출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 철회권 행사의 장점 등을 사전 안내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